

52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정 1112 16A	(전화번호 42)	위원장	전결규정	조 호
처리기한		기안자	위원장	전결사항	전결사항
시행일자	2.19	농정과 문헌처	위원장	제	자
보존년한		기안일자	위원장	14	자
보조 기관	농정과 추진계	4	위원장	14	자
협조	농정	회계심의위원	회계과장		
경수 참	유신 조	각안 참조	통 검열 1970. 2. 20 서울특별시 공무원	발 송 서	과대장 정리
제 목	1970년도 정기종추검사 실시 (안 1)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1. 추진법 제3조의 개정에 의한 70년도 정기 종추검사를 별지 종추검사 실시요령에 의거 하려					
와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가. 실시기간 . 3.20 ~ 4.20					

서울특별시

시립삼성직업보도원(제출)

나. 검사두수

1) 한우 200 두

2) 돼지 500 두

3) 산양 200 두

다. 검사 실시기관 각구칭

라. 소요경비

1) 보조 인부임 25,480 원

가) 배역 280 원 x 91 일 = 25,480 원

4) 지출방법

채당액을 각구칭에 영달고서 함

(별지 영달배역표 참조)

나) 지출과목 산업비 농정관리 축산관리

인부임

2) 검사원 수당 20,000 원

가) 배역

한우 200 두 x 30 원 = 6,000 원

돼지 500 두 x 20 원 = 10,000 원

산양 200 두 x 20 원 = 4,000 원

4) 지출방법

각구칭에 채당액을 영달고서 함 (별지

영달배역표 참조)

다) 지출과목 산업비 농정관리 축산관리

수단

3) 재요구입

가) 각구보관중인 기저 사용은 건책으로
라되 사업실시에 부족한 기구는 구매요구서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각구에 배정코자 함

4) 예산 범위 1,55,000 원

4) 지출과목 산입비 동정관리 추산관리

수용비

은

(안 2)

수신 동림부 장관

참조 추산과장

제목 같은 건

1. 추산법 제3조의 기정에 의한 당시관내
70년도 종추검사 계획은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검사계획

화			우			퇴			지			산			양		
검사수			지정수			검사수			지정수			검사수			지정수		
총	추보	계	총	추보	계	총	추보	계	총	추보	계	총	추보	계	총	추보	계
100	100	200	20	20	40	200	300	500	100	150	250	100	100	200	50	50	100

(안 3)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같은 건

정기 총측 검사에 관한 제 3 조의 개정에 의한 1970년도 실시요령에 의거 실시하나

정사에 만전을 기하고 그결과를 소정서식에 의거 보고할 것 (4. 30 한)

- 첨부 1. 총측검사 실시요령 1부
- 2. 정사원 수량 및 인부원 내역 1부
- 3. 총측검사 계획표 1부
- 4. 총측검사 지정 실적 보고서식 1부
- 5. 고시문 부본

수신처 서형 3-9

(안 4)

수신 한국 총측계량 협회

제목 같은 건

당시 관내 1970년도 정기 총측검사를 실시 실시요령에 의거 실시하나 본사업 수행에 전구

검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총측검사 실시요령 1부
- 2. 총측검사 계획표 1부

(안 5)

수신 공보실장

발신 농정 과장

제목 같은 건

추진법 제 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이 의하여 7. 별도 정기 공학 검사를 실시 하려

하오나 별첨과 같이 고시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부 록

(고시문은 원안을 첨부해서 발송함)

중후검사 실시 요령

1. 목적, 무양종후의 신경활동으로 가후의 자립거양을 기한다
2. 검사범위, 검사관내 전부
3. 검사대상, 한우, 돈, 산양
4. 검사기간, 3.20 ~ 4.20 (30일간)
5. 검사장소, 각종 검사원이 사육장을 회회 실시한다.
6. 검사계획위원회, 지정위원회 별첨과 같은
7. 실시 방법.

가. 축산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중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신청에 따라 현장에나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나. 중후검사 신청서는 별첨서식에 의함

다. 검사원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검사원은 주청장이 위촉을 하여 한우종후 거양 계획나, 병학 중후거양 회회 국원은 검사원으로 위촉 실시 하는 방법은 강구할 것

라. 중후검사 기원은 동업주의 제8항호 중후검사 기원의 의함

마. 수검자는 가후의 혈중농도 또는 중후대장 및 창과 수장은 검사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바. 검사의 동행한 중후에는 축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동을 조류에 부착시키고 병학 중후명세서를 수검자 또는 사육자에게 교부한다.

스. 중후검사, 중후주사 별첨서식에 의거하여 중후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한다.

아. 본조인부. 을 검토 권은, 일각, 형식 등 원 하나
(검토부, 인이 본조인부, 인 2용)

자. 검토 기구 및 자료는 귀주에 본조인부 및 간여부는
다음하리 부속하는 시에의 일각구함 개정했다.

차. 후산법 제 3조 및 동시행 규칙 제 2조에 대한 변
경의 내용은 관여의 개시하여 사업 수행이 만전을
기할 것

카. 귀주에서는 본검토 기구에 만전을 기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검토를 리행하고, 철저한 검토를 실시
할 것

(시에의 수시 검토 사항을 확인할 것임)

고 시 (안)

서훈특별시 고시 제 1호

1970년도 정기 공채 검사 실시

측산법 제 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이
의하여 70년도 정기 공채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별첨	부심자
1. 1	사무관장
2. 1	주심
3. 1	사무장
4. 1	사무장
5. 1	사무장
6. 1	사무장
7. 1	사무장
8. 1	사무장
9. 1	사무장
10. 1	사무장

실시 범위	서훈특별시 전역
실시 기간	3. 20 ~ 4. 20

검사 대상	한우 폐지, 사양
검사 방법	공채검사를 받고자 하는 후보자 는 관할 구청이 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면 검사권이 순회청장 검사한다
검사 장소	검사신청이 의한 가축사육장소

6. 기라

기라 자세한 것은 관할 구청 산업과 (농림과)
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0.

서훈특별시장

중 속 감사 지정 실적 보고서

구분	1991년		1992년		1993년		비고
	감사부수	지정수	감사부수	지정수	감사부수	지정수	

(주) 가늠정보 작성 함것.